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 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8월 30일

발 의 자 : 김 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순선, 김정태, 김수규, 장상기  
경만선, 최 선, 김제리, 조상호  
최웅식 의원(9명)

## 1. 제안 이유

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교통안전의 범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포함함(안 제5조제4호).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교육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교통사고”를 “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교통안전 : 등하교시 또는 교육 활동 중의 <u>교통사고</u>와 관련된 안전</p> <p>5. ~ 7. (생 략)</p>	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 <u>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</u>---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